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346 |
|----------|-----|

제출년월일 : 202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법률에 근거한 제명 수정
나. (유형추가) 상습 가뭄재해지구 추가 등을 반영한 4개 유형 추가
- ① 유실, ② 고립, ③ 취약방재, ④ 상습가뭄
다. (유형별 상세내용 추가)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4. 5. 28. ~ 24. 6. 17.) 결과, 의견제출 없음
 - 평창군 공고 제 2024-778호, [건설과-17261(2024. 6. 18.)호]
-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해당
 -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기획예산과-1626(2024. 7. 26.)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실-6053(2024. 4. 17.)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8621(2024. 9. 5.)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123(2024. 8. 5.)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4934(2024. 9. 26.)호]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를 “제15조제3항에 의하여”로, “사항”을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해일위험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를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EL.m)”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작물중”을 “공작물 중”으로,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를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을 ““침수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불량, 해일”을 “불량”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7호)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를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로, “붕괴 등으”를 “붕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중전의 제8호) 중 “안”을 “내”로 한다.

7. “유실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하천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라 함은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우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1. “상습가뭄재해지구”라 함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 본문 중 “안”을 “내”로 한다.

제5조 중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를 “**침수위험지구 등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침수위험지구 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해소대책**”을 “**해소 대책**”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를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로, “**배수상황**”을 “**배수 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배수개선사업**”을 “**배수 개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소 할**”을 “**해소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침수 및 유실 등**”을 “**침수위험지구에서**”로, “**침수 피해**”를 “**피해**”로, “**성토 및 정지작업**”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8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

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

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2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7. “유실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하천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하천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출입하는 교통 기반 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라 함은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 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0. -----
--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 붕괴-----.

11. “상습가뭄재해지구”라 함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12. -----
-- 내-----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
---- 내-----

-----.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 -----

-----.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1. -----

----- 해소 대책 -----
----- . -----

-----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
----- 배수 상황 -----
----- . -----

2. ----- 배수 개선사업 -----

3. -----

----- 해소 -----

4. 침수위험지구에서 -----
----- 피해 -----
----- 토지의 형질변경 -----

<신 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

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

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

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

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

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

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

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

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

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신 설>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
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
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
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
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
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
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
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
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
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
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신 설>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

협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1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
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

<신 설>

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
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
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
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
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
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12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
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
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
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

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
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
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
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
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관계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제25조의3에 따른다.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정하는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나·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 ②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중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 |
|-----|----------------------|
| 작성자 | 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
| 연락처 | (033) 330 - 2019 |